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역상황,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의 원룸형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2조제5호의 공공택지 내에서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

제18조제6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”를 “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”로 한다.

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.

제10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획재정부차관 · 교육부차관 · 안전행정부차관 · 농림축산식품부차관 · 산업통상자원부차관 · 보건복지부차관 · 환경부차관 · 고용노동부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사착수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제6항 개정규정의 단서에 따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.

<신 설>

5.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

제50조(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) ① ~ ⑤ (생략)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들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.

<단서 신설>

1.·2. (생략)

5. 법 제2조제5호의 공공택지 내에서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

6.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-----

--

제50조(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.

다만,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<p>⑦ ~ ⑨ (생략)</p> <p>제108조(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위원장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/p> <p>1. <u>기획재정부차관·교육부차관·안전행정부차관·농림축산식품부차관·산업통상자원부차관·보건복지부차관·환경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⑦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8조(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.</p> <p>1. <u>기획재정부차관·교육부차관·안전행정부차관·농림축산식품부차관·산업통상자원부차관·보건복지부차관·환경부차관·고용노동부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369